

통신위성에 의해 전달되는 프로그램 송신부호 배분에 관한 협약

( '브뤼셀 협약' )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the 'Brussels Convention')

1974 년 5 월 21 일 브뤼셀에서 채택

## 통신위성에 의해 전달되는 프로그램 송신부호 배분에 관한 협약 ('브뤼셀 협약')

체약국들은,

프로그램 전파 배급용 위성의 이용이 양적, 지리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성에 의하여 전송된 프로그램 전파가 당초 계획하지 않은 자들에 의하여 수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 시스템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성통신 이용자의 숫자 가 줄어들어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려하고*,

작가, 배우, 녹음기 생산자 및 방송업체 등의 수익성을 인식하고 있는 협약국은 위성에 의하여 전파되는 프로그램이 불특정다수 수신자들에게 배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다만, 이미 발효된 국제적인 협정(즉 '국제원거리통신협약' 및 '부속 라디오 방송규정' 등)에 타격을 가해서는 안되며, 특히 연기자, 녹음기 생산자 및 방송사의 보호를 위하여 1961년 10월 26일에 제정된 로마협약에 어떠한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본 협약의 적용상:

- (1) '전파'는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는 전기적으로 생산된 매개물;
- (2) '프로그램'은 음향이나 이미지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기록물로, 궁극적으로 배급을 위해 송출된 전파로 구현된다;
- (3) '인공위성'은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외계에 설치된 장비;
- (4) '방출전파' 혹은 '방출된 전파'란 위성을 통하여 전파된 프로그램을 나르는 신호;

- (5) '파생된 전파'란 기술적 특징을 가진 방출전파를 1 개소 또는 그 이상의 중개소를 거쳤든 상관없이 변조함으로 얻어지는 신호;
- (6) '발생기관'은 송출된 전파로 무슨 프로그램을 전달할 것인 가를 결정하는 사람이나 법적 단체;
- (7) '분배자'란 일반 공중 및 어떤 특정 부분에 파생전파의 송출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나 법적 단체;
- (8) '분배'는 배급자가 일반 공중 및 어떤 특정 부분에 파생신호를 전파하는 작업.

## 제 2 조

1. 각 계약국은 위성을 통하여 송출되는 프로그램 전파가 의도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배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주관기관이 또 다른 국가적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나 송출전파가 파생전파로 되어있는 곳도 이 조치를 따를 의무가 있다.
2. 어떤 계약국의 경우에 위에서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 국내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조약국으로부터 협약 등을 비준, 수락 또는 동의를 받을 때 잠정적인 적응기간 동안의 상황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받아야 한다.
3. 1 항에서 언급한 의무가, 이미 허가를 받은 배급자가 송출한 전파를 받아서 송출하는 파생전파의 경우에는 동 협약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 제 3 조

본 협약은 일반공중이 주관기구나 이를 대신한 기구가 송출한 전파를 위성을 통하여 직접 수신하는 곳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 제 4 조

어느 계약국도 제 2 장 1 항에서 언급한 조치를 송출된 전파가 당초 의도하지 않은 배급자에 의하여 송출된 전파일지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 (1) 송출된 전파에 의하여 전송된 단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유익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2) 송출된 전파에 의하여 전송된 단발적인 프로그램이 인용구와 같은 것으로, 그것이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실행되고 어느 정도 합당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3) 유엔에서 인정한 원칙과 부합하여 송출된 전파에 의하여 전송된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이 오직 교육적인 목적 (성인교육인 과학연구 포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 제 5 조

송출 전파에 관한 본 협약을 어느 협약국도 기타 국가가 스스로 효력을 인정하기 전까지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

## 제 6 조

어떤 국제법이나 국제적 합의하에서도 본 협약으로 인하여 작가, 연기자, 방송사 등의 기득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 제 7 조

어떤 국제법이나 국제적 합의하에서도 본 협약으로 인하여 협약국이 독점남용을 막기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적용하는데 있어 권리를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

## 제 8 조

1. 아래의 2, 3 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어느 조항도 유보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2.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1974.5.21) 비준서에 의하면 어느 협약국의 국내법에 제 2 조 1 항에 있는 발생기관의 국적이 다른 조약국에 있는 경우 전파가 그 국가로부터 송출된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3. (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1974.5.21) 비준서에 의하면 유선이나 그와 유사한 통신채널로 공중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의 보호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조약국에는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나) 위의 (가)에 동의하여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여 그 동안 적용할 수 없어 유보되었던 국내법에 변화가 일어나면 6 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9 조

1. 본 협약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이것은 유엔 회원국, 유엔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회원국 및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2. 본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및 수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 1 항에서 언급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3. 비준, 수락, 가입증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 있어야 한다.
4. 한 국가가 본 협약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경우, 그 국가는 그의 국내법에 따라 협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 제 10 조

1. 본 협약은 제 5 번 증서인 비준, 수락서 혹은 가입서를 기탁한 후 3 개월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제 5 번 증서인 비준, 수락서 혹은 가입서를 기탁 후 본 협약에 비준, 수락, 가입한 국가에게 본 협약은 증서 기탁 후 3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 11 조

1. 어떤 국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고지서로 본 협약을 비판할 수도 있다.
2. 비판내용은 고지서가 접수된 후 12 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 제 12 조

1.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4 개의 본문에 똑같이 서명된다.
2. 정본은 아랍어, 화란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으며, 이는 관련정부와 협의 후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세계저작권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유엔 사무총장은 제 9 조 제 1 항에 언급된 국가, 유네스코사무총장, 세계저작권협회장,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원거리통신연합 사무총장에게 아래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약의 서명;

(2) 비준, 수락, 서명서의 기탁;

(3) 제 10 조 제 1 항에 의한 협약의 효력발생일;

(4) 제 2 조 제 2 항, 제 8 조 제 2 항 혹은 제 3 항과 관련된 비준서와

그 본문의 기탁;

(5) 비판 고지서의 접수.

4. 유엔 사무총장은 2 부의 본 협약 사본을 제 9 조제 1 항에서 언급한 모든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